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서대문구에서는 관내 시설 여건이 열악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시설 개선을 도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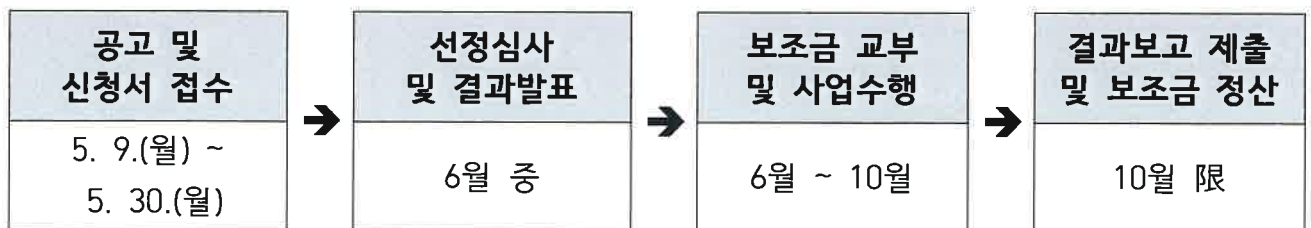
2022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I 공모개요

- 공모명 :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자격 : 서대문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기간 : 2022. 6월 ~ 2022. 10월
- 지원규모 : 총10,000천원(기업별 3,500천원 내외, 3개 기업 내외)
※ 기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2022. 10월 31일까지 보조금 정산 완료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5. 9.(월) ~ 5. 30.(월) 18:0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이 메 일 : yjp0322@sdm.go.kr(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지원내용 : 사업장(영업시설 및 작업장 등) 노후된 위험 시설 개선 및 시설 환경 개선
 - 방수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배관공사, 외벽공사 등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
 - 노후 전기배선 정리 및 계량기함 . 배전함 교체 등 안전사고 예방
 - LED전등 교체 등 에너지 절전형 설비지원(단순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집기 등 구매 불가)
- 지원 제외대상 : 자산성 항목 (소모품 등)
- 지원 비율 : 구비 90% 자부담 10%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 근무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환경개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신청서 1부 [별지 1호]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2호] 3) 사업비 집행계획서 [별지 3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5) 신청관련 증빙서류 (견적서, 현장 사진 등)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8) 건물 사용동의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II

심사 개요

심사계획

○ 심사방법

- 외부위원을 포함한 4인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사업비집행계획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종합평가

○ 최종선정 : 3개 내외 기업 선정

심사기준

○ 환경개선 필요성(40)

- 작업장 및 시설의 노후화, 작업설비 등의 위험성, 시급성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40)

- 사업계획의 현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수행능력(20)

- 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사업 수행 의지, 자부담 여부 등

Ⅲ

세부 내용 및 기타 안내사항

□ 추진 일정

- 신청기간 : 2022. 5. 9. ~ 5. 30.
- 현장실사 및 심사 : 2022. 6. 2. ~ 6. 9. (여건에 따라 1~2회 현장실사)
- 선정일자 : 2022. 6. 10. (예정)
- 보조금 교부 : 2022. 6. 15. (예정)
- 사업 추진 : 2022. 6. 15. ~ 2022. 10.
- 사업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022. 10. 限

※ 사업을 중도에 변경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대문구에 변경 신청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미한 사항의 경우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지원방식

-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참여 신청(신청서 등 제출) 후 현장실사 및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보조금 교부 : 기업별 일괄 교부(사회적경제과)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금 반환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사업중단 및 보조금 반환 조치
 - ①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원조건 위반
 -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격상실(조합 해산 및 인가 취소 등)
 - ④ 보조금 수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사업에 미착수한 경우
 -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⑥ 동일 사업으로 타 보조금(국고 및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 ⑦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02-330-1898)